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5
----------	------

발의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김태욱, 홍영진, 안영호  
문희성, 안영호, 문기호  
박경흠, 김도운, 정재환  
강혜순

1. 개정이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출석요구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실질적 감사 및 조사권 확보와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한 통지 절차 및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유 발생 사전 고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항)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5항)
- 다. 과태료 부과·징수 처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명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6항)
- 라.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합성 확보
  - 허위증언 → 거짓증언 (안 제9조제4항)
  - 기립하여 → 일어서서, 선서문 → 선서서 (안 제10조제3항)
- 마.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 2)

###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49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5. 8. 14. ~ 8. 20.(6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의”를 “자에게”로, “의견진술의 요구”를 “의견진술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로, “이를 행해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게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중 “허위증언”을 “거짓증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선서거부·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 미제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의장은 이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해야 하며 별표의 선서문에 의해야 한다.”를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 중 제목 “선서문”을 “선서서”로 하며,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함”을 “증인으로서 증언함”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 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u>자의</u> 출석·증언 및 <u>의견진술의 요구</u>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해 <u>이</u> <u>를 행해야 한다.</u> &lt;후단 신설&gt;</p> <p>②·③ (생략)</p> <p>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u>허위</u> <u>증언</u>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p> <p>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u>정당한 이유없이</u> <u>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u> <u>· 선서거부· 정해진 기간까지</u></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 ----- ----- <u>자에게</u> ----- ----- <u>의견진술을 요구하</u> <u>고자 하는 경우에</u>----- ----- ----- <u>서면으로 통지하여야</u> ----- ----- . <u>이 경우 증인으</u> <u>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게는</u> <u>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u> <u>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u> <u>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u>거짓</u> <u>증언</u>----- ----- ----- .</p> <p>⑤ ----- ----- ----- <u>사유 없이</u> <u>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u> <u>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정당</u></p>

요구서류 미제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증인의 선서등) ①·② (생략)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해야 하며 별표의 선서문에 의해야 한다.

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의장은 이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⑥ 제5항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증인의 선서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

[별표 1] 선서서<개정 2010.7.12.><개정 2015.12.28.><개정 2022.1.3.>

##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직 위(생년월일) :  
성 명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장 귀하

[별표 2] <신 설>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 관련)

위 반 행 위	위반내용 및 횟수	부과기준 금액
서류 미제출	미제출 1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미제출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불응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선 서 거 부	거부 1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거부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증 언 거 부	일부거부 1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일부거부 2회 이상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전체거부 1회	2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전체거부 2회 이상	35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에  
해당함.

### 3. 작성자

- 소 속: 의회사무국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성 명: 권기연
- 연락처: (052)290-4241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